

4. 근거법규

- 가.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및 제139조(사용료 징수조례 등)
- 나.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

5.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불명확하게 규정된 보훈대상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물놀이장 이용료 반환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므로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사료됨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